

	<h1>보 도 자 료</h1> <p>제공일 : 2023년 3월 17일</p> <p>사 진 : 포함(1매)</p>	작성과	의회사무과
		담당부서	부서장 : 김차민 팀 장 : 이정묵 담당자 : 김시현
		연락처	061)830-6065

## 고흥군의회, 제313회 임시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 -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기준 마련 -

- 고흥군의회(의장 이재학)는 17일 임시회에서 ‘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’ 을 통과시켰다.
- 박규대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서 “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어촌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, 특히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” 고 말했다.
- “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촌 붕괴가 현실화 될 수 있다” 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.
- 이에 “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,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의 포획·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” 고 강하게 주장했다.
- 결의안에는 ▲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·보호와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 ▲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.

- 한편, 현행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지 않은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지 못한다.

